

Q 검사를 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관세청장이 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검사를 받은 컨테이너 화물은 수출입자가 부담한 컨테이너 운송비, 물품 상·하차료와 출·입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Q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자(화주)는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주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하고,
- ②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특히, 거래명세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검사비용 지원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검사비용 지원금을 허위, 과다 청구하거나 오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가 환수되며, 제재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유선 상담

소속	부서명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 안전검사과 (제도안내)	042-481-1142 042-481-7904
		02-2107-2523
		02-2107-2529
		02-2107-2530
		02-2107-2531
		02-2107-253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신청·심사 문의)	02-2107-2534
		02-2107-2537
		02-2107-2538
		02-2107-2539
인천세관		02-2107-2544
		02-2107-2545
		(FAX) 02-857-3282
		032-452-3644
		02-510-1382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051-620-6953
서울세관		053-230-5183
부산세관		062-975-8192
대구세관		031-8054-7032
광주세관		125
평택세관		1544-1285

2. 인터넷 상담

1. 관세청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 이용안내 > 인터넷상담신청 > 신청하기
2. 시스템 관련 상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질의응답 > 신규버튼 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제도개요

관세행정목적상의 수출입화물 검사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 일부를 일정 조건 충족시 국가에서 보전

2. 도입배경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 부담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경감, 공익 확보, 적정한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

- ▶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 대기업 대비 검사 건수가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검사비용 부담 완화
- ▶ 세관검사에 대한 수출입업체의 검사 협조 환경을 조성하여 불법 위해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 우범화물 반입 차단

3. 지원범위

- ✓ **대상업체 :** 중소·중견기업
※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체납자는 제외
- ✓ **검사유형 :** 관리대상화물 수입검사(반입후 검사 제외), 부두직통관, 적재지 수출검사, 신고지 수출검사(공항만 반입후 신고 대상에 한함)
- ✓ **물품범위 :** 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 ✓ **지원범위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4. 검사비용 지원 신청절차

■ 사전 준비

01

통관고유부호 받기

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구분코드) 신청하기
- 유니패스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02

유니패스 회원가입

유니패스(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가입하기
웹사이트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03

신고인부호 받기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아야 화주가 직접 지급신청서를 작성
하여 세관에 전송 가능
[신고인 부호 체계 : 일련번호 5자리 생성]

■ 신청서 제출

1. 유니패스 로그인

»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로그인

2.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내역 : 해당화물 정보 및 화주정보, 계좌정보, 검사비용 기재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오류가 없는지 확인 한 후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전송

※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오류 통보

» 전송 후 오류로 통보되면 해당 항목을 정정한 후
재전송하거나 유니패스 기술 지원센터로 문의 (T. 1544-1285)

4. 접수 확인

» 지급신청서 접수 확인
- 처리현황 조회

5. 검사비용 지원 심사 및 지급절차

STEP 1 심사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등 심사
 - 서류보완 :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후 보완요구 받은 경우 요구통보일로부터 15일 내 추가자료 제출
 - 각하 : 보완요구 자료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요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 정정신청 :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취하신청 :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검사비용 심사 후 남아있는 예산을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 지급예정: 예산 확인 결과 지급기한 내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지급보류: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원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지급중단: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 검사비용 지급액 확정

STEP 2 지급

- ▶ 신청시 제출된 화주 계좌로 검사비용 지급

※ 환수

지급액 결정 착오로 과다(오)지급된 경우 화주로부터 지급액을 환수

중소·중견기업과 함께하는 관세청

